

# 기획위원회 규정

제정 2013. 7. 1.   개정 2013. 11. 15.  
개정 2014. 3. 1.   개정 2015. 8. 31.  
                          개정 2016. 7. 2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경대학교 기획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개정 2014.3.1., 2015.8.31., 2016.7.28.>

**제3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대학의 장·단기 발전계획과 기본 정책에 관한 사항
2. 주요 학사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학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
4. 예산편성의 방향과 내용, 예산대비 결산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1.15.>
5. 본 대학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6. 기타 본 대학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연구 및 실무위원 위촉)** ① 위원회 위원 및 교직원 중에서 제4조의 사항을 연구 또는 필요한 자료의 수집, 정리와 위임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장은 연구위원 및 실무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7조(간사)** 회의록 작성 및 기타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3.1.>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세칙)** 이 규정이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칙

- ① (시행일) 본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① (시행일) 본 규정은 2013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① (시행일) 본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① (시행일) 본 규정은 2015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개정) 제2조(구성) ②항의 기획홍보처장 명칭은 '기획처장' 으로 개정한다.

부칙

- ① (시행일) 본 규정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②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개정) 제2조(구성) ②항의 기획처장 명칭은 '기획조정실장' 으로 개정한다.